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47호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371 호	남동구 행정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
○ 공 고 제 373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13
○ 공 고 제 374 호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5

고 시

○ 고 시 제 22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남촌어린이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 시 재 생 과 31

회 관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371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9.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기구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이관사무 정비를 통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안정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기획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안 제6조)
- 행정국에 두는 부서 및 부서명칭 변경(안 제7조)
- 재정경제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안 제8조)
- 안전교육국 신설과 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안 제9조)
- 복지국에 두는 부서의 신설 및 변경(안 제10조)
- 환경교통국에 두는 부서 및 환경교통국장의 직급 변경(안 제11조)
- 장애인지원과 신설 등에 따른 실·과의 분장사무 반영(별표 1)

3 입법예고기간 : 2025. 2. 19 ~ 2. 20.(1일간)

-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3-2052, FAX 43-205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관사무 및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기획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안 제6조)
- 행정국에 두는 부서 및 부서명칭 변경(안 제7조)
- 재정경제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안 제8조)
- 안전교육국 신설과 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안 제9조)
- 복지국에 두는 부서의 신설 및 변경(안 제10조)
- 환경교통국에 두는 부서 및 환경교통국장의 직급 변경(안 제11조)
- 장애인지원과 신설 등에 따른 실·과의 분장사무 반영(별표 1)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문화관광과장·체육진흥과장·평생교육과장·민원봉사과장”을 “총무과장·문화관광과장·체육진흥과장·민원여권과장”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을 “보하며,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재무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을 “재무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생활경제과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생활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축수산물과장”을 “농축수산물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을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안전교육국) 안전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중 “복지정책과장·사회보장과장·노인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아동복지과장·보육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사회보장과장·노인정책과장·장애인지원과장·아동복지과장·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교육국장

②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장애인과”를 “노인정책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책기획국) 정책기획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제6조(정책기획국) ----- ----- ----- ----- ----- ----- <u>기업지원과</u> <u>장</u> ----- <u>지</u> <u>방공업사무관</u> ----- ----- --.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총무과장 · 문화관광과장 · 체육진흥과장 · 평생교육과장 · 민원봉사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	제7조(행정국) ----- ----- <u>총무과장 · 문</u> <u>화관광과장 · 체육진흥과장 · 민</u> <u>원여권과장</u> ----- ----- <u>보하</u> <u>며, 토지정보과장</u> ----- -----.
제8조(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재무과장 · 세무1과장 · 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u>	제8조(재정경제국) ----- ----- <u>재</u> <u>무과장 · 세무1과장 · 세무2과장</u> <u>· 생활경제과장</u> ----- --- <u>농축수산과장</u> ----- -----

로, 생활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제9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 사회보장과장 · 노인장애인과장 · 여성가족과장 · 아동복지과장 · 보육정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청소행정과장 · 환경보전과장은

제9조(안전교육국) 안전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복지국) -----
----- 복지정책과장
· 사회보장과장 · 노인정책과장
· 장애인지원과장 · 아동복지과장 · 보육정책과장-----

-----.

제11조(환경교통국) -----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
사무관으로 보하며, 공원녹지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녹지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
설사무관으로, 자동차관리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위
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 제12조 (생 략)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신 설>

제13조 · 제14조 (생 략)

제4장 사업소

<신 설>

제15조 · 제16조 (생 략)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신 설>

제17조 · 제18조 (생 략)

-- 지방행정사무관-----

-----.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삭 제>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삭 제>

제4장 사업소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삭 제>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제18조 · 제19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373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9.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에 따른 [별표 1] 개정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 정(안)						비고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1,335	823	32	98	14	368 (12)	1,335	825	32	98	14	366 (12)	
일반직 계	1,330	818	32	98	14	368	1,330	820	32	98	14	366	
4급 소계	8	6	1	1			9	7	1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0	0					1	1					+1
이하생략	⋮	⋮	⋮	⋮	⋮	⋮	⋮	⋮	⋮	⋮	⋮	⋮	
5급 소계	68	37	2	8	1	20	69	38	2	8	1	20	+1
행정·사회복지	10	6				4	11	7				4	+1
이하생략	⋮	⋮	⋮	⋮	⋮	⋮	⋮	⋮	⋮	⋮	⋮	⋮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 정(안)						비고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8급 소계	359	216	1	28	5	109	359	217	1	28	4	108	-
사회복지	77	28				49	77	29				48	-
이하생략	⋮	⋮	⋮	⋮	⋮	⋮	⋮	⋮	⋮	⋮	⋮	⋮	
9급 소계	84	48		6		30	82	47		6		29	△2
행정	32	17				15	31	16				15	△1
행정·사회복지	6	2				4	5	2				3	△1
이하생략	⋮	⋮	⋮	⋮	⋮	⋮	⋮	⋮	⋮	⋮	⋮	⋮	

3 입법 예고기간 : 2025. 2. 19. ~ 2. 20.(1일간)

-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민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3-202, FAX 43-20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에 따른 [별표 1] 개정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 정(안)						비고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1,335	823	32	98	14	368 (12)	1,335	825	32	98	14	366 (12)	
일반직 계	1,330	818	32	98	14	368	1,330	820	32	98	14	366	
4급 소계	8	6	1	1			9	7	1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0	0					1	1					+1
이하생략	⋮	⋮	⋮	⋮	⋮	⋮	⋮	⋮	⋮	⋮	⋮	⋮	
5급 소계	68	37	2	8	1	20	69	38	2	8	1	20	+1
행정·사회복지	10	6				4	11	7				4	+1
이하생략	⋮	⋮	⋮	⋮	⋮	⋮	⋮	⋮	⋮	⋮	⋮	⋮	
8급 소계	359	216	1	28	5	109	359	217	1	28	4	108	-
사회복지	77	28				49	77	29				48	-
이하생략	⋮	⋮	⋮	⋮	⋮	⋮	⋮	⋮	⋮	⋮	⋮	⋮	
9급 소계	84	48		6		30	82	47		6		29	△2
행정	32	17				15	31	16				15	△1
행정·사회복지	6	2				4	5	2				3	△1
이하생략	⋮	⋮	⋮	⋮	⋮	⋮	⋮	⋮	⋮	⋮	⋮	⋮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35	825	32	98	14	366 (12)
정무직 계	1	1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30	820	32	98	14	366
2급 소계	1	1				
이사관	1	1				
4급 소계	9	7	1	1		
서기관	6	5	1			
기술서기관	2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69	38	2	8	1	20
행정	27	15	2			10
의무	4			4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11	7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지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8	6				2
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	1			1		
6급 소계	331	208	8	21	3	91
행정	117	61	5			51 (12)
세무	14	14				
사회복지	19	8				11
숙 기	1		1			
공업	2	2				
녹지	3	3				
보건	2	2				
환경	5	5				
시설	22	22				
전산	2	2				
방송통신	1	1				
운전	4	3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세무	15	11			1	3
행정·사회복지	43	18	1			24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6	5			1	
행정·녹지	3	3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9	19				
행정·전산	1	1				
행정·방재안전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 · 방송통신	1	1				
행정 · 운전	1	1				
사회복지 · 시설	1	1				
공업 · 환경	3	3				
공업 · 시설	3	3				
보건 · 의료기술	3			3		
보건 · 간호	5			5		
의료기술 · 간호	3			3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1	1				
행정 · 속기 · 사무운영	1		1			
행정 · 농업 · 수의	2	2				
행정 · 녹지 · 환경	1				1	
행정 · 보건 · 간호	5			3		2
녹지 · 시설 · 해양수산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4			4		
보건 · 간호 · 간호조무	1			1		
7급 소계	478	301	20	34	5	118
행 정	159	85	14		1	59
세 무	27	27				
사회복지	78	30				48
사 서	1	1				
속 기	2		2			
공 업	7	7				
농 업	4	4				
녹 지	8	8				
수 의	1	1				
해양수산	2	2				
보 건	7	6		1		
의료기술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간 호	16	1		6		9
환 경	12	12				
시 설	43	43				
전 산	9	9				
방송통신	3	3				
운 전	5	2	1		1	1
기계운영	1	1				
행정·세무	12	11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사서	8	8				
행정·공업	3	3				
행정·녹지	2	2				
행정·수의	1	1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18	18				
행정·전산	2	2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5	3			2	
공업·방송통신	1		1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3			3		
보건·간호	17			17		
의료기술·간호	5			5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2			
8급 소계	359	217	1	28	5	108
행 정	120	81	1			38
세 무	8	7			1	
사회복지	77	29				48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사 서	2	2				
공 업	8	8				
농 업	3	3				
녹 지	6	4			2	
보 건	14	11		3		
의료기술	4			4		
간 호	25			14		11
환 경	4	3			1	
해양수산	1	1				
시 설	23	23				
전 산	4	4				
방송통신	5	5				
운 전	10	1		1		8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사서	5	5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5	15				
행정·전산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2			2		
행정·보건·간호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82	47		6		29
행 정	31	16				15
세 무	4	4				
사회복지	13	1		1		11
사 서	4	4				
공 업	2	2				
녹 지	1	1				
보 건	4			4		
의료기술	1			1		
시 설	10	10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5	2				3
행정·사서	2	2				
행정·녹지	1	1				
행정·방재안전	2	2				
연구직 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계	4	4				
5급(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 복지담당 행정직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374호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9.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관사무를 정비하여 사무배분 원칙 및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 본청 사무전결 사항 개정[별표 1]

개정부서	주요내용
복지정책과	자활사무 이관에 따른 전결사항 삭제
노인정책과	부서명칭 변경 및 장애인사무 이관에 따른 전결사항 삭제
장애인지원과	장애인 및 자활사무 전결사항 신설
민원여권과	부서명칭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5. 2. 19 ~ 2. 20.(1일간)

-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3-2052, FAX 43-205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관사무를 정비하여 사무배분 원칙 및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본청 사무전결 사항 개정[별표 1]

개정부서	주요내용
복지정책과	자활사무 이관에 따른 전결사항 삭제
노인정책과	부서명칭 변경 및 장애인사무 이관에 따른 전결사항 삭제
장애인지원과	장애인 및 자활사무 전결사항 신설
민원여권과	부서명칭 변경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5-2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남촌어린이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남촌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802,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2. 20.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7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칭: 이웃사촌 어울마당2 (남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규모

- A=5,944.2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6.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이름	주소	
1	남촌동	376	공원	5,944.2	5,944.2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